

# 제1827호

2021. 8. 12.(목)

발행인 : 영등포구청장  
편집인 : 홍보미디어과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3  
전화 : 02-2670-7561

# 영등포구보

## 고 시

· 제2021-166호 도로명주소 부여, 폐지 고시 ..... 1

## 공 고

· 제2021-1319호 제232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공고(추가) .....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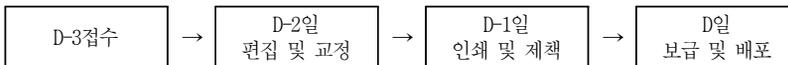
※ 구보게재를 의뢰한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

구보의 게재내용은 영등포구홈페이지<<http://www.ydp.go.kr>(영등포소식→새소식→영등포구보)>에 게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게재의뢰 및 편집문의 (☎ 02-2670-7561 / 전송: 02-2670-3581)

◎ 구보발행일은 매주 목요일 (공휴일인 경우 익일 발행, 공포 등 필요시 발행일 조정 가능)

◎ 구보게재접수는 D-3일(월요일)까지 접수



영등포구 발간등록번호

3180244-0070-2021

**고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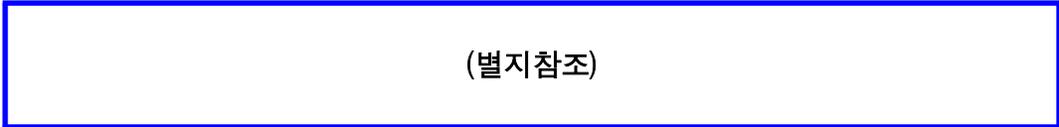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2021-166호

**도로명주소 부여, 폐지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및 제12조제5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 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8월 12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 도로명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 8 (당산동6가) 외 9건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등포구청 부동산정보과(☎2670-3722)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제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 제12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 도로명주소 부여 조서

| 연번 | 지번주소  | 도로명주소                        | 도로명주소<br>고시일 | 이동사유 | 도로명고시일     | 도로명부여사유    | 비고 |
|----|---|------------------------------|--------------|------|------------|------------|----|
| 1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br>당산동6가 3-5, 3-9,<br>3-12, 3-13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br>8 (당산동6가)  | 2021-08-12   | 신규부여 | 2010-05-27 | 양평동 동명칭 인용 |    |
| 2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br>신길동 3961-1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br>대방천로 219 (신길동) | 2021-08-12   | 신규부여 | 2010-05-27 | 대방천 명칭 인용  |    |

■ 도로명주소 폐지 조서

| 연번 | 도로명주소                            | 폐지일        | 폐지고시일      | 비고 |
|----|----------------------------------|------------|------------|----|
| 1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신로1길 13-5 (도림동)      | 2021-08-09 | 2021-08-12 |    |
| 2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산로 161 (도림동)         | 2021-08-09 | 2021-08-12 |    |
| 3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신로1길 13-6 (도림동)      | 2021-08-09 | 2021-08-12 |    |
| 4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로35나길 14 (대림동)      | 2021-08-09 | 2021-08-12 |    |
| 5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102길 13 (영등포동)     | 2021-08-09 | 2021-08-12 |    |
| 6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35나길 5 (영등포동6가)   | 2021-08-09 | 2021-08-12 |    |
| 7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35나길 5-1 (영등포동6가) | 2021-08-09 | 2021-08-12 |    |
| 8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방천로 213 (신길동)        | 2021-08-09 | 2021-08-12 |    |

**공 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21-1319호

**제232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공고(추가)**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라 제232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부의안건을 다음과 같이 추가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12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제232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목록》**

| 연번 | 안 건 명                                 | 소관부서   |
|----|---------------------------------------|--------|
| 1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경상북도 울릉군과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 비전협력과  |
| 2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 주차문화과  |
| 3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부동산정보과 |

붙임: 상정안건 3부. 끝.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경상북도 울릉군과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           |  |
|-----------|--|
| 의 안<br>번호 |  |
|-----------|--|

제출년월일: 2021. 8.

제 출 자: 영등포구청장

- 1. 안 건 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경상북도 울릉군과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 2. 근거법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의회동의)
- 3. 목 적: 양 도시 간 실질적인 교류를 통한 우호관계 확립 및 지역발전 도모

## 4. 자매결연 체결 관련 자료

### ○ 그 간의 추진경위

- 2021. 3. : 자매결연 실무교섭 개시(영등포구 ↔ 울릉군)
- 2021. 3. ~ 5: 사전교류 및 교류협력 공동 관심분야 협의(영등포구 ↔ 울릉군)
- 2021. 5. : 자매결연 협력사업(안) 부서의견 조회,  
자매결연 실무협의(우리 구 실무진 울릉군 방문)
- 2021. 7. : 자매결연 협력사업(안) 확정, 자매결연 체결 추진계획 수립

### ○ 구체적인 교류계획

- 문화·교육: 교육환경 개선, 독도체험관 ⇄ 독도박물관 교류 전시회 개최,  
온라인 전시회 통한 독도체험 대중화, 죽도 관광지 재개발
- 2021. 10. 국립 독도체험관 개관 예정(영등포 타임스퀘어 내 확장이전)
- 경 제: 도농협력 생산자-소비자 간 농·수 특산물 판매 지원 및 홍보,  
울릉군 각종 특산물 판매 홈페이지 홍보
- 행 정: 우수 정책에 대한 정보공유 및 상호발전 도모

### ○ 기대효과

- 우리 구의 대외적 경쟁력 강화 및 홍보
- 양 도시 간 신뢰와 협력을 통한 우의 증진 및 상호발전 도모
- 자매도시 간 우수 역사문화 체험의 기회 마련

### ○ 자매결연 체결 계획

- 체결일자: 2021. 10. (예정)
- 장 소: 독도체험관
- 체결방법: 서명 체결
- 체 결 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 경상북도 울릉군수

○ 양 도시의 일반현황

[2021. 7월 말 기준]

| 구 분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경상북도 울릉군  |
|-------|--|---|
| 면적    | 24.37km <sup>2</sup> (서울시 면적의 4.03%)   | 72.82km <sup>2</sup>  |
| 인구    | 377,408명 (185,467세대)   | 9,019명 (5,332세대)  |
| 재정 규모 | 8,103억원<br>일반회계: 7,750억원 / 특별회계: 353억원<br>(재정자립도: 31.42%)  | 2,000억원<br>일반회계: 1,972억원 / 특별회계: 28억원<br>(재정자립도: 9.21%)   |
| 행정 기구 | 18개동 583통 4,932반<br>공무원 정원 1,476명  | 1읍 2면 25리 224반<br>공무원 정원 401명   |
| 특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강과 안양천 그리고 안양천과 도림천, 대방천이 합류하는 지점</li> <li>▪ 수도권 서남부의 최대 거점도시</li> <li>▪ 정치, 금융, 언론, 업무의 복합기능지역</li> <li>▪ 도심과 외곽지역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li> <li>▪ 경인지역 산업발전의 근원지</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2년 국내최초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li> <li>▪ 독도·오징어축제 등 풍부한 관광자원과 다양한 문화축제 보유</li> <li>▪ 오징어, 호박엿, 울릉약소(한우), 명이·부지깁이 나물 등의 특산물이 유명</li> <li>▪ 동해상의 울릉도 본섬과 독도, 죽도, 관음도 등 44개의 부속섬으로 이루어짐</li> </ul>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           |  |
|-----------|--|
| 의 안<br>번호 |  |
|-----------|--|

제출년월일: 2021. 8.

제 출 자: 영등포구청장

### 1. 제안이유

사업내용이 우수하여 올바른 자동차관리사업 문화 및 공공복리 증진을 선도하는 자동차관리사업자를 모범사업자로 지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조례 제정 목적(안 제1조)
- 나. 모범사업자 지정계획 수립 및 공고(안 제2조)
- 다. 모범사업자 지정신청 및 지정(안 제3조 ~ 제4조)
- 라. 모범사업자 지정증 발급 및 유효기간(안 제5조 ~ 제6조)
- 마. 모범사업자 관리대장 및 지정증 회수(안 제7조 ~ 제8조)
- 바. 모범사업자 지원(안 제9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 다. 협의사항
  - 1) 규제심사: 신설·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
  - 2) 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분석평가·인권영향평가: 해당 없음
- 라. 입법예고(2021. 1. 21. ~ 2. 5. / 15일 간) 결과: 의견 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내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및 취소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자동차관리사업 개선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계획의 수립)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이하 “모범사업자”라 한다) 지정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모범사업자의 지정신청) 모범사업자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모범사업자 지정 등) ① 제3조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21의4에 따른 모범사업자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검토하여 모범사업자 지정여부를 결정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른 조합등과 협조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지정증 등의 발급 등)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모범사업자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모범사업자 지정증(이하 “지정증”이라 한다)을 발급하고 별표1의 모범사업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을 교부한다.

② 모범사업자는 표지판을 사업장 내부 또는 외부의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③ 모범사업자는 사업장의 소재지 또는 상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정증 및 표지판을 구청장에게 반납하고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모범사업자 지정의 유효기간) ① 모범사업자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② 모범사업자로 재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2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재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재지정의 기준 및 절차는 제4조를 따른다. 이 경우 “지정”은 “재지정”으로 본다.

제7조(모범사업자 관리대장) 구청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모범사업자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지정증 및 표지판 회수) 구청장은 모범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지정증 및 표지판을 회수하여야 한다.

1. 법 제58조의2제2항에 따라 모범사업자 지정이 취소된 경우
2. 모범사업자 지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3. 자동차관리사업을 양도·양수하거나 합병한 경우
4. 자동차관리사업을 폐업한 경우

제9조(모범사업자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모범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모범사업자 표지판 제작
2. 홍보매체 등을 이용한 홍보 지원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표지판(제5조 관련)**

1. 규격 및 재질

가. 규격 : 50cm(가로) × 30cm(세로)

나. 스테인레스판 실크인쇄

2. 표지판 도안 등

가. 도안

지정번호:

지정기간: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상호 :** \_\_\_\_\_

위 업소를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로 지정합니다.

**영 등 포 구 청 장**

나. 색상

○ 바탕 : 은회색

○ 글씨 : 상호는 노란색, 상호 이외에는 흑색

다. 그 밖에 영등포구의 상징 등의 문양을 넣을 수 있다.



[별지 제2호 서식]

지정번호 : 제        호

##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증

- 상    호 :
- 대 표 자 :
- 소 재 지 :
- 업    종 :
- 지정기간 :

위 업소를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영 등 포 구 청 장**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
|-----|--|
| 의 안 |  |
| 번 호 |  |

제출년월일: 2021. 8.

제 출 자: 영등포구청장

## 1. 제안이유

「도로명주소법」의 전부개정(시행 '21.6.9) 및 행정안전부 조례표준안 통보에 따라 우리 구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제명 변경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 나. 용어 변경

- “도로명주소안내시설” → “주소정보시설”

### 다. 건물번호판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 및 광고비용 규정(안 제3조~제4조)

### 라. 위원회 명칭 변경(안 제6조)

- “도로명주소위원회” → “주소정보위원회”

### 마. 주소정보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도로명주소법」,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 다. 협의사항

- 1) 규제심사: 신설·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
- 2) 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분석평가·인권영향평가: 해당 없음
- 라. 입법예고(2021. 7. 15. ~ 8. 4. / 20일 간) 결과: 의견 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명주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소정보의 사용 확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주소정보를 사용한다.

1. 도로명: 모든 도로의 명칭
2. 도로명과 기초번호: 「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 외에 도로변 공터의 위치표시
3. 도로명주소: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외에 각종 건물등의 위치표시
4. 국가기초구역과 국가기초구역번호: 법 제22조제6항 외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일반에 공표되는 각종 구역 설정·변경의 기초단위
5. 국가지점번호: 법 제23조제2항에 규정한 외에 산악 등에 설치된 시설물 및 문화재 등의 위치표시
6. 사물주소: 건물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을 공부에 등록하거나 각종 안내에 사용하는 위치표시

제3조(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 산정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3조제5항에 따라 교부하는 건물 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에 대하여,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 제작 비용과 그 기준일을,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1. 구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과 관련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조달단가
2.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구입과 설치에 필요한 재료비 등을 포함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에 등록되지 않은 형태의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경우 실제 제작에 드는 비용

② 구청장은 교부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의 징수는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제작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4조(광고의 비용)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광고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료
  - 가. 구가 광고를 하는 경우
  - 나.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하는 경우
  - 다.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유료: 제1호 각 목 외에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

제5조(주소정보의 생활화 시책 추진) 구청장은 주소정보의 생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27조에서 정한 주소정보 사용을 지원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 1. 주소정보를 안내하는 주소정보안내판 등의 시설의 설치
- 2. 버스정류장 및 철도역사(도시철도 역사를 포함한다), 여객자동차터미널, 여객터미널, 공항 등에 설치·표기하는 위치표시등에 주소정보 사용
- 3. 구 산하기관, 민간단체 등의 주소정보 사용을 촉진 하는 사업
- 4. 구 단위의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보급
- 5. 그 밖에 구청장이 주소정보의 사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9조에 따라 구 주소정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구성에 대해서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정한다.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공무원이 아닌 자로 한다

- 1. 주소정보와 관련있는 구 소속 공무원
- 2. 소방, 경찰, 도로관리 등 주소정보 관련 기관의 소속 공무원
- 3. 주소정보산업 및 도로교통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 4. 구의 특성과 역사, 지리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 및 부서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3.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③ 제2항의 해촉에 따라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자순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소집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

제10조(위원회의 간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주소정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제11조(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손해배상 공제가입) 구청장은 주소정보시설로 인한 안전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법 제31조에 따라 손해배상공제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주소정보의 홍보·교육) ① 구청장은 법 제31조에 따라 주소정보의 사용방법 등에 관한 홍보물 등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민방위·예비군 교육, 각종 단체의 회의·행사·교육 등에 주소 정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시·구 교육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각급 학교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위탁) ① 구청장은 주소정보 업무가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법 제33조제2항의 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도로명판과 기초번호판의 설치
2.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물번호판의 교부·재교부
3.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기본도의 작성 및 관리
4.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배포
5.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주소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6.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조사 및 조치
7. 영 제40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점번호 설치 및 관리
8. 영 제4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사물주소판의 교부 및 재교부에 관한 사항
9. 영 제5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주소정보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10. 영 제53조에 따른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제6호에 관한 사항을 법 제33조제2항의 기관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공단
2. 최근 3년 이내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주소정보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 실적이 있는 업체
- ③ 제1항제6호의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조사 및 조치를 추진하는 경우, 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주소정보시설의 종류, 수량, 위치
2. 계약기간 및 금액
3. 주소정보시설의 관리 및 정비계획
4. 주소정보시설의 일제조사 계획
5. 주소정보시설의 훼손·망실에 따른 조치계획
6. 주소정보시설의 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계획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